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다소 보통 낮은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위험 낮은

위험

위험

위험

교보악사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을 <u>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u> 펀 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교보악사 퇴직연금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보악사 퇴직연금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 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교보악사 퇴직연금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교보악사자산운용㈜
:	각 판매회사 본・지점 /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명단은 교보악사자산운
	용㈜ 홈페이지(www.kyoboaxa-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
	w.kofia.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6월 1일
:	2025 년 7월 11일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 조좌]
:	2017년 5월 31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

-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종류형 포함)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교보악사 퇴직연금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BQ4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	BU84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	BU845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 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 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 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 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www.kyoboaxa-im.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또는 1인 이상의 미국(법)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미 조 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 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u>최초로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u>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을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 1호(주식)" 및 "교보악사 Tomorrow 장기우량증권모 <u>투자신탁 2호(채권")</u>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 후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5.06.01)

교보악사 퇴직연금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BQ495)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4 6 매우 높은 다소 보통 낮은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위험 낮은 위험 위험 위험

교보악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mark>실제 수익률의 변동성</mark>을 <mark>감안하여</mark>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50% 이상을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하고, 4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가격변 동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교보악사 퇴직연금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트자전략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 투자신탁 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으로 50% 이상을 국내 우량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고 40% 이하를 KOSPI 200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형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투	지	Н	٤١	3

	투자자가	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클래스 종류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	없음	0.900	0.20	1.11	0.9101	93	189	289	502	1,116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e)	없음	0.800	0.10	0.73	0.81	83	169	260	451	1,004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3)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 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주4) 총보수•비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보수포함)은 합성 총보수•비용 을 의미하며,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또는 기타비용 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익증권인 경우 수치화 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종류	최초설정일	2024/06/02 ~ 2025/06/01	2023/06/02 ~ 2025/06/01	2022/06/02 ~ 2025/06/01	2020/06/02 ~ 2025/06/01	(%)			
퇴직연금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운용)	2017-06-02	7.10	6.83	4.61	4.28	3.37			
수익률 변동성(%)	2017-06-02	6.65	7.20	7.50	7.02	6.45			
퇴직연금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C	2017-06-02	3.55	4.58	2.83	2.85	2.15			
수익률 변동성(%)	2017-06-02	6.25	7.03	7.39	6.95	6.48			
퇴직연금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Ce	2017-11-28	6.26	5.99	3.78	3.46	2.55			
수익률 변동성(%)	2017-11-28	6.65	7.21	7.51	7.03	6.64			

주1) 비교지수: 없음

-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 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 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혼합채권형, 단위:%)

최근1년

운용사

최근2년

운용경력

년수

직위 성명 생년 운용역 집합투자 운용규모 기구 수 최근1년 최근2년 <책임운용전문인력> 수석 7 개 3,830 억원 김솔 1983 7.1 운용역

운용현황

(2025.06.01 기준)

16년 1.33 3.06 11개월

운용전문 인력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액티브퀀트 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 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 시)에 담당 본부내(혹은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 다.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 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 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 위험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 등 가격 변동위험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당 증권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 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 의 요인들은 증권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증권가격의 등락을 초래 하며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 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Q 01 ±1 = 1 = 1 = 1 = 1	11 11 6 11 = " - 1 1	OLTH E OIL FELSI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 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위험 (Tracking Erro	으로 하고 있으나, 투등 현실적 제한으로 를이 실현되지 아니힐 과 추적대상 지수의 :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KOSPI200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717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보유하는 국니	내외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품 등의 가치가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			
			선물 등 장내파	생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			
	롤오버 위험	기 선물 또는 옵션으	로 재투자를 해	현물과 달리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차 야하며 재투자 가격이 만기일의 만기			
			않을 위험 (이를 롤오버 위험이라 합니다)이 있습니 로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습니다.				
	・ <u>오후5시(17시</u>) 이전 자금을 납입한		・ <u>오후5시(17시) 이전</u> 환매를 청구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제3</u>			
	영업일(D+1) ⁰	세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영업일(D+2)의 수익증권의 기준가			
매입	기준가격을 적	용					
방법	・오후5시(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		 환매금액 지급			
		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	환매 방법	·오후5시(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			
		(D+2)에 공고되는 수익		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			
	증권의 기준기			터 제4영업일(D+3) 의 수익증권의			
환매	02112	1 12 10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			
수수료	없음			(D+4)에 환매금액 지급			
, ,			 일 집한투자기구	그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			
		자기구 총좌수					
	산정방법		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				
기준가		산	· 소께사다에서	[[[[[[[[[[[[[[[[[[[
	= .1=1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	 합투자업자(www	w.kyoboaxa-im.co.kr) · 판매회사 · 한			
	공시장소 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	원천 징수하지 '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			
-1.11	련 세법에 따	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l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① 세액공제	<u> </u>					
	- 연금계좌	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	득이 있는 거주	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			
	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	금액 + 연금저축	추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u>600만원</u>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	당사항 없	음						
집합투자 업자	교	보악사자(난운용주식	회사 [대표전호	h: 02-767-9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kyoboaxa-im.co.kr			
모집기간	豆	력발생 이	후 계속 년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10조좌			
효력발생 일	20)25년 7월	11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	합투자업계	다(www.ky	oboaxa-im.co.k	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목적, 요약 재두 : 참고하시기 ㅂ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			
		종류(0	Class)		집합투자기구	·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판매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 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 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경로	오프라인	로 판매되는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퇴직연금		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 ·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kyoboaxa-im.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kyoboaxa-im.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u>www.kyoboaxa-im.co.kr</u>)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투자신탁의 개요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3. 모집예정금액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5. 인수에 관한 사항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4. 집합투자업자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용어풀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투자신탁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교보악사 퇴직연금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BQ4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BU84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	BU84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형(혼합채권)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해당사항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2)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 가능합니다.
모집개시일	2017년 5월 31일부터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
	자업자(www.kyoboaxa-im.co.kr) 홈페이지 참고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주1) 모집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교보악사 퇴직연금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BQ4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BU84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	BU84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주요 내용
2017.06.02	최초 설정
2018.09.03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삭제 - 매입 및 환매 기준시간 변경(15시 30분 -> 17시) - 환매대금 기준가 적용일 및 지급일의 변경 (15시 30분 이전 : 2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영업일 환매대금 지급 -> 17시 이전 : 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영업일 환매대금 지급) - 투자위험등급 등급 변경(3등급 -> 4등급)
2019.07.09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2019.09.16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에 따른 변경
2020.07.01	-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투자대상자산 종류 및 위험도기준' 4등급' -> 실제 수익률 변동성 '4등급' 5.32%') - 모투자신탁 법시행령 (단일종목 편입한도 완화 개정사항) 변경사항 반영
2021.01.28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신한아이타스㈜) → 하나펀드서비스㈜)
2021.06.30	-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실제수익률 변동성 변경 (실제 수익률 변동성 '4등급' 5.32'%' -> 실제 수익률 변동성 '4등급' 6.57%')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2.04.22	운용전문인력 변경 (책임: 박찬 →곽성환)
2022.07.22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실제수익률 변동성 변경 (실제 수익률 변동성 '4등급' 6.57% -> 실제 수익률 변동성 '4등급' 6.69%')
2023.01.06	운용전문인력 변경 (책임: 곽성환 → 배한주)
2023.07.06	-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실제수익률 변동성 변경 (실제 수익률 변동성 '4등급' 6.69%-> 실제 수익률 변동성 '4등급' 6.98%)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 퇴직연금제도 과세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 배한주 → 김솔)

	-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4등급' 6.98%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2024.06.27	'4등급' 14.61%')						
2024.06.27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2025 07 11	-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변경 반영						
<u>2025.07.11</u>	(14.61% →15.07%, 4등급 유지)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						

[※] 상기 연혁은 최근 5년의 변동내역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교보악사자산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5층)		
주소 및 연락처	대표전화 : 🕿 02-767-9600		
	홈페이지: www.kyoboaxa-im.co.kr		

주1)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1													
							운용 (2025.06.				구 연평균 권형, 단위		운용경	0.174
성명	생년	직위	집합투자	운용규모	운용	용역	운용	용사	력년수	이력				
			기구 수	正台廿五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운	<책임운용전문인력>													
김솔	1983	수 용 용 용	7 개	3,830 억 원	7.1	-	1.33	3.06	16년 11개월	-토러스투자자문 주식운용부 퀀트리서치 -대신증권 Global-Market전략 실 퀀트리서치 -KB투자증권 매크로전략팀 퀀 트리서치 -아이지에이웍스 데이터분석				

					- (현)교보악사자산운용 액티
					브퀀트운용팀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액티브퀀트 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 시)에 담당 본부내(혹은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2) 상기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구분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 (억원)
김솔	0개	0원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2017.06.02 ~ 2017.10.16	박영열
2017.10.17 ~ 2022.04.21	박찬
2022.04.22 ~ 2023.01.05	곽성환
2023.01.06 ~ 2023.07.05	배한주
2023.07.06 ~ 현재	김솔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채권혼합),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나.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신탁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 (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교보악사 Tomorrow 장기우량증권모투자신탁2 호(채권)	교보악사 파워인덱스증권 모투자신탁 1호(주식)
교보악사 퇴직연금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 탁(채권혼합)	50% 이상	40% 이하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모투자신탁	50% 이상	교보악사 Tomorrow장기우량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
1	포구시신국 	40% 이하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

2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1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활용을 위해 운용함.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 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 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 및 모투자신탁 교체(리밸리싱)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 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4)호 및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의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교보악사 Tomorrow장기우량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	
			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	
1	채권	60% 이상	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	
			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u>「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u>	
			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이하 "단기사채등")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2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	
			택저당증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	40% 이하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	
3		40% 99	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	
			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4	ㅁ니프립기네	/	투자신탁이 5	부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집합투자증권등	집합투자증권등 409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5			40/0 919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

			합투자증권		
6	증권의 대여	50% 이하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 총액기준		
7	환매조건부매도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 기준		
8	환매조건부매수	10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		
9	증권의 차입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0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 계된 것		
11)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12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13	신탁업자 고유재 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4)	채권회수를 위한 주식 취득	집합투자업자는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할 수 있다.			

-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합니다.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④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 주2) 투자대상 자산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 주3)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 주4)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

دغدا	교모약사파워인텍스승권모투사진략1호(주식)] 투자대상 부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	국내 주식	7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2	채권	30% 이하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 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이하 "단기사채등")		
3	어음	3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4	자산 유동화증권	3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 택저당증권		
(5)	급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가 되도록 한다.				
6	집합투자 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 40% 이하 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 한 집합투자증권		
7	증권의 대여는 투	자신탁이 보유	우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로 한다.		
8	파생상품	위험 평가액이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9	환매조건부매수	10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		
10	환매조건부매도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		
11)	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12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13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니	바인 상품에 한함		
14	신탁업자 고유재 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	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 ⑤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 주2) 투자대상 자산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 주3)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4)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	
	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	
이쉐교기이	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	
이해관계인	으로 운용할 수 없다.	-
투자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	
	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외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교보악사 Tomorrow장기우량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

구분 내용	적용예외
-------	------

이해관계인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①~②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① 국채증권,「한국은행법」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②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동일종목 투자	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행위	
후순위채권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 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적용유예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내지 제10호, 제19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시기까지)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

구분	내용	적용예외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	
	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	
이해관계인과의	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	
거래	으로 운용할 수 없다.	
7141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	최초설정일로
	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부터 1개월간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	
	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	
	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1) 국채증권,「한국은행법」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	
동일종목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	
투자	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	
	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	
	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	
	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	
	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	
	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	
	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	
	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	
	자하는 경우	
	3)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하는 경우	
	4)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	
	/ · · · · · · · · · · · · · ·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	
	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	
	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	
	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기월간 적용한다.	
	5)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	
	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법 시행령 제	
	246조에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동일종목의 증권에 그 투자신	
	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파생상품의 매매에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 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	부터 1개월간
투자	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	
	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적격요건(투자적격등급 이상의 평가)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	
	을 매매하는 행위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집합투자증권	나에 해당하는 행위	
- 합합구시 6 년 - 투자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	
	을 기준으로 한다.	
	5)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	
	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	
	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	
	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	
지분증권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	
	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에의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	
무군귀세권에의 투자	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一十八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6호 내지 제11호, 제19조제 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①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②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국내 우량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고 40% 이하를 **KOSPI 200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형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③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등의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교보악사 Tomorrow장기우량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

- 이 투자신탁은 국채, 통안채, 공사채, 은행채, 우량 회사채 등 안정성이 높은 자산에 주로 투자합니다.

(1) 듀레이션 전략

- 분기별/월별/주간 단위별 듀레이션 변동을 통해 자본이득 추구
- 자본이득에 의한 수익률향상 보다는 만기수익률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운용

(2) 포트폴리오 전략

- 채권 종목별 스프레드 전략 : 채권별 스프레드 통계 분석에 의한 종목교체
- 채권 및 파생상품 평가에 따른 매매 전략 : 파생상품의 평가를 통해 포트폴리오 구성에 반영
- 신용스프레드 매매 전략 : 등급별 종목별 스프레드 분석을 통한 종목 선정
- 저평가 종목 발굴, 차익거래 기회 포착 등으로 수익획득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

(1) 기본 운용전략

- 이 투자신탁은 KOSPI 200 지수를 구성하는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여 KOSPI 200 지수를 수익률을 추적하면서 KOSPI 200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주식형) 모투자신탁으로써 KOSPI 200지수 수익률에 연계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 대부분을 KOSPI 200 지수 구성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KOSPI 200 지수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합니다.
-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펀드에 편입되는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는 KOSPI 200 지수를 구성하는 주식들로써 KOSPI 200지수를 구성하는 비중과 유사하게 구성되며 추적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운용됩니다.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내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주식들의 배당 수익
- ②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 KOSPI 200 지수선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률이 낮은 것을 매수하고 수익률이 높은 것을 매도하였다가 향후 수익률의 차이가 줄어들거나 역전이 되는 경우 청산하는 차익거래
 - ③ 보유 주식 대차를 통한 대차수수료
 - ④ 보유 주식의 매수청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

(2) 세부 운용전략

- ① KOSPI 200 지수 복제 포트폴리오 시스템 운용
 - 당사 인덱스 펀드 운용에 사용되는 KOSPI 200 복제 System 사용
 - 월 정기 리밸런싱 및 상시 리밸런싱을 통하여 추적오차의 최소화
 - 추적오차 모니터링 시스템 및 리밸런싱 제약조건을 통하여 효율적 추적오차 관리
- ②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포리오를 구성하는 주식들의 배당 수익
- ③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 KOSPI200지수선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률이 낮은 것을 매수하고 수익률이 높은 것을 매도하였다가 향후 수익률의 차이가 줄어들거나 역전이 되는 경우 청산하는 차익거래
 - 현물 vs 선물 차익거래 (KOSPI200복제 포트폴리오 vs KOSPI200선물)
 - 현물 vs 합성선물 차익거래 (KOSPI200복제 포트폴리오 vs KOSPI200합성선물)

- 선물 vs 옵션 차익거래 (KOSPI200선물 vs KOSPI200합성선물(옵션))
- 현물 vs 개별주식 선물 차익거래 (개별종목 vs 개별주식 선물)
- ④보유 주식 대차를 통한 대차수수료 수익
- ⑤보유 주식의 매수청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
 - 주1) 추적오차(Tracking Error): [인덱스복제포트폴리오 수익률 KOSPI200 지수수익률]의 절대값
 - 주2) 상장지수펀드(ETF): KOSPI 200 지수와 같은 수익률을 내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거래소시장에서 주식처럼 매매 할 수 있음
 - 주3) 차익거래 : 동일한 상품에 대해 두 시장에서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 서 그 상품을 매입하고 가격이 비싼 시장에서는 그 상품을 매도해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나. 위험관리

(1) 목표 듀레이션의 유지

- 목표 듀레이션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적정한 시장위험 외에 추가적인 변 동위험을 회피합니다.

(2) 우량채권에 분산 투자

- 대부분의 자산을 국채 및 공사채 은행채에 투자하며 회사채의 경우 A-이상 투자함으로써 투자자산의 부실화 가능성 및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3) 추적오차(Tracking Error) 관리 방안

- 투자자산 중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는 당사의 인덱스 복제 시스템에 의하여 구성 되어지고 구성된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는 사전에 정해진 운용프로세스상 제약 조건에 따라 정기 리밸런싱(월별) 및 상시 리밸런싱을 통해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5% 이상의 추적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 됩니다. 단, 인덱스 구성 종목의 변경 또는 구성종목의 비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 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대부분을 국내 우량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모투자신탁과 KOSPI 200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형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국내 주식 시장의 가격 및 채권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

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위험은 자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투자위험들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 동시에 적용되는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안 <u>것합니다.)</u>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이 투자신탁은「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예금자보호법」에 따라보호되지 않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 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 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 등 가격 변동위험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당 증권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증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증권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 투자신탁 재산 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 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추적오차 발생위험 (Tracking Error)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KOSPI200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동일한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보유하는 국내외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롤오버 위험	주가지수 옵션 또는 선물 등 장내파생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옵션 또는 선물 등 파생상품은 현물과 달리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차기 선물 또는 옵션으로 재투자를 해야하며 재투자 가격이 만기일의 만기상환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위험 (이를 롤오버 위험이라 합니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	
유동성위험	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 중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	
재산가치변동	환매성구절과 환매철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성구절도구려 환매철까지의 무자진 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 됩니다.	
위험	국제단의 기자단증에 떠든 커텀에 그걸 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	
환매연기위험	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	
	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추가형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집합투자기구	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	
해지(해산) 위험	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	
	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펀드의	
변동에 따른 위험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 금융자산 및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 그리고 펀드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 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관계자들이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그 원천이 되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권의 처분을 통한 총수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FATCA) 및 미국납세의무자

(US Taxpayers)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쉽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
	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의무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증권대차 거래위험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위험

투자위험 등급 (4) 등급 보통 위험 수준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의 자투자신탁으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경제여건 변화와 증권의 가격변동에 대한 상관관계, 증권의 투자위험,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 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중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하 'VaR')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15.07%으로, 4등급(보통위험)에 해당합니다. 추후 매 결산시마다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 위험등급	변경사유		
2010.00.02	252 452	▶ 모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변경에 따른		
2018.09.03 3등급 → 4등급		투자위험등급 변경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 은 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시장위험 기준에 의한 것이며, 투자전략, 환율위험,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및 파생상품 위험, 환변동성 노출여부 및 시장상황, 실제 상품특성에 따라 최종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상기 투자위험등급은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 년간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매입방법, 절차 및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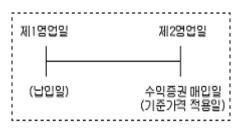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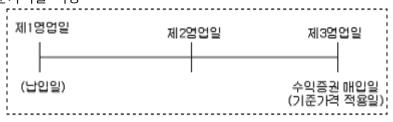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	가입제한 없음
연금(C)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연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
금(Ce)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u>오후5시(17시) 이전</u>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u>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D+1)</u>에 공고되는 수 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② <u>오후5시(17시) 경과 후</u>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u>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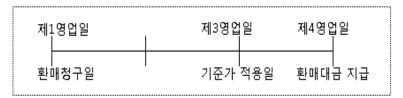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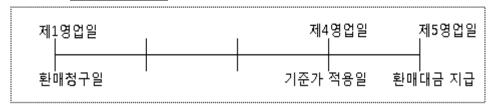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오후5시(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의 수익증권의 기

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금액 지급



- * 환매대금 실 수령일은 환매청구 후 제4영업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u>오후5시(17시) 경과 후</u>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제4영업일(D+3)</u>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환매금액 지급



- * 환매대금 실 수령일은 환매청구 후 제5영업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

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3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 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화매를 연기하는 사유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 ⑥ 집합투자업자는 '⑤'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 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환매연기사유
-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 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위의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환매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자세한 정보는 (4)환매수수료 또는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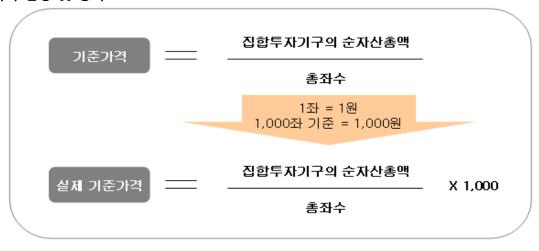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	0	-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조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판매회사 엽업점, 한국금융 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1)	및 등록주식	최종시가)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2	비상장주식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
3	01141000	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
3-1	장외파생상품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
(4)	상장채권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4	ㅇㅇ세ㄹ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5)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9	기 0 0 개 년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6)	기업어음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0	금융기관이	2위하다 개단하다되시자 웨이에는 시크를 시포포 한 시크

	발행한 채무증서	
7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7-1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8	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9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 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 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수수료율						
(클래스)	가입자격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	제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퇴직연금(C)								
수수료미징구-온 라인- 퇴직연금(Ce)	온라인(인터넷)전 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는 종류(Class)별로 가입자격 및 수수료, 보수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가입자격 및 보수 등이 상이한 Class를 다수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지급비율	(연간,%)				
명칭 (클래스)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업 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총보수	기타비 용	총보수 •비용	동 영 보 수 총 수	총보수 •비용 (피투자 집합투	증권 거래 비용

				보수					자기구 보수포 함)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0.675	0.20	0.015	0.01	0.00	0.00	0.00	1 11	0.0101	0.0102
인-퇴직연	0.675	0.20	0.015	0.01	0.90	0.00	0.90	1.11	0.9101	0.0192
금(C)										
수수료미징										
구-온라인-	0.675	0.10	0.015	0.01	0.00	0.00	0.00	0.72	0.01	0.0107
퇴직연금	0.675	0.10	0.015	0.01	0.80	0.00	0.80	0.73	0.81	0.0197
(Ce)										
717171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				사유	
시합시기					발생시	-	-	-	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06.02~2025.06.01]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익증권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 *기타비용예시: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 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 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4.06.02~2025.06.01]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이 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익증권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예시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3) 금융비용 예시: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REPO지급이자, 차입금지급이자, 대여금이자비용, 차입채권지급이자 등 각종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 투자비율에 따라 모펀드의 매매수수료 및 금융비용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u>*</u>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증권 거래비용	6,069
금융비용	108,905

-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5)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보수포함)은 합성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또는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익증권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 주6)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비용을 제외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은 이 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7)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 니다.

※ 기타비용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기타 비용)

-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단,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 ②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③'①'의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구분		투자기간(단위 : 천원)						
	T正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미징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2	189	289	502	1,114		
구-오프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인-퇴직연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	93	189	289	502	1,116		
금(C)	수·비용 포함)							
수수료미징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2	167	256	446	993		
구-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퇴직연금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	83	169	260	451	1,004		
(Ce)	수·비용 포함)							

주1) 투자자가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익증권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기준지표	보수 산정방식	한도 (%)	산출 주기	지급 시기	(조	지급 전 회계연	내역 년도 기준, '	%)
		산정방식 (%) 주:	T/I	T/I ^ /I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	-	-	-	-	-	-	-	-

[※] 다음 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제1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투자신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이익금의 분배 유보로 인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대효과 : 투자신탁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 익을 합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지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총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통하여 과세시점을 확정한 후 수익증권을 추가 매수하는 방식을 통해 과세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 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투자설명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 입니다. 그러나 <mark>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 가능합</mark>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①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②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③ 집합투자기구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지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지수합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 (지방소득세 포함)

- ①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②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 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u>600만원</u> 이내의 금액)과 연 <u>900만원</u>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대상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 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투 자자의 일부환매, 중도 해지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 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 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6 기(2022.06.02 ~ 2023.06.0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7기(2023.06.02 ~ 2024.06.0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8기(2024.06.02 ~ 2025.06.0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재무상태표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항 목	2025.06.01	2024.06.01	2023.06.01			
운용자산	23,684,252	34,358,314	36,406,720			
유가증권	22,333,093	31,812,825	34,239,26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351,159	2,545,489	2,167,455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6,503	29,572	22,488			
자산총계	23,700,755	34,387,886	36,429,208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224,717	0	0			
부채총계	1,224,717	0	0			
원본	22,476,038	34,926,336	39,435,839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0	-538,450	-3,006,631			
자본총계	22,476,038	34,387,886	36,429,208			
	요약손익계산서					
<u>ئ</u> ـ ـ ـ ـ ـ ـ ـ ـ ـ ـ ـ ـ ـ ـ ـ ـ ـ ـ ـ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항 목	2025.06.01	2024.06.01	2023.06.01			
운용수익	1,492,466	2,486,251	52,585			
이자수익	63,348	62,201	99,313			
배당수익	1,078,523	1,017,881	404,159			
매매평가차손익	350,595	1,406,169	-450,887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	1,492,466	2,486,251	52,585
매매회전율	0	0	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8기 0원 7기 0원 6기 0원)

주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8기 0원 7기 0원 6기 0원)

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8 =	2025.06.01	2024.06.01	2023.06.01
운용자산	23,684,252	34,358,314	36,406,720
현금및예치금	1,351,159	2,545,489	2,167,455
현금및현금성자산	1,351,159	2,545,489	2,167,455
정기예금	0	0	0
증거금	0	0	0
기타예금	0	0	0
대출채권	0	0	0
콜론	0	0	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매입어음	0	0	0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22,333,093	31,812,825	34,239,265
지분증권	0	0	0
채무증권	0	0	0
수익증권	22,333,093	31,812,825	34,239,265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건물	0	0	0
토지	0	0	0
건설중인자산	0	0	0
농산물	0	0	0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6,503	29,572	22,488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3,813	22,418	22,311
정산미수금	0	0	0
미수이자	2,690	7,154	177
미수배당금	0	0	0
선급비용	0	0	0
선납세	0	0	0
외화환산손익조정	0	0	0
기타미수입금	0	0	0
자 산 총 계	23,700,755	34,387,886	36,429,208
운용부채	0	0	0
옵션매도	0	0	0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기타부채	1,224,717	0	0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정산미지급금	0	0	0
해지미지급금	0	0	0
미지급운용수수료	0	0	0
미지급판매수수료	0	0	0
미지급수탁수수료	0	0	0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0	0	0
수수료미지급금	0	0	0
차입금	0	0	0
기타미지급금	0	0	0
미지급이익분배금	1,224,717	0	0
부 채 총 계	1,224,717	0	0
원 본	22,476,038	34,926,336	39,435,839
간접투자기구안정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0	-538,450	-3,006,631
자 본 총 계	22,476,038	34,387,886	36,429,208
부채 및 자본 총계	23,700,755	34,387,886	36,429,208
총좌수	22,476,038	34,926,336	39,435,839
기준가격	1000.00	984.58	923.76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손익기	볚산서	
	제 8 기	제7기	제 6 기
항 목	2024.06.02 ~	2023.06.02 ~	2022.06.02 ~
	2025.06.01	2024.06.01	2023.06.01
운용수익(운용손실)	1,492,466	2,486,251	52,585
투자수익	1,141,871	1,080,082	503,472
이자수익	63,348	62,201	99,313
배당금수익	1,078,523	1,017,881	404,159
수수료수익	0	0	0
임대료수익	0	0	0
기타투자수익	0	0	0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001,551	1,421,832	612,878
지분증권매매차익	784,093	307,666	263,920
채무증권매매차익	0	0	0
파생상품매매차익	0	0	0
외환거래매매차익	0	0	0
지분증권평가차익	217,458	1,114,166	348,958
채무증권평가차익	0	0	0
파생상품평가차익	0	0	0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650,956	15,663	1,063,765
지분증권매매차손	650,956	15,663	607,700
채무증권매매차손	0	0	0
파생상품매매차손	0	0	0
외환거래매매차손	0	0	0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456,065
채무증권평가차손	0	0	0
파생상품평가차손	0	0	0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기타손실	0	0	0
기타운용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운용수수료	0	0	0
판매수수료	0	0	0
수탁수수료	0	0	0
사무수탁수수료	0	0	0
매매수수료	0	0	0
이자비용	0	0	0
임대자산관련비용	0	0	0
기타운용비용	0	0	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0	0	0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0.00	0.00	0.0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1,492,466	2,486,251	52,585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48.92	62.75	1.00

라.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단위 : 원]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당해 연도			전년도							
구분		거래	비용		거리	배비용						
1 2	거래금액(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거래금액(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10,318,137	3,410	0.03	11,275,245	3,947	0.04						
주식 이외의 증권	16,753,105	5	0.00	19,611,806	72	0.00						
장내파생	21,276,403	1,406	0.01	27,904,163	1,566	0.01						
기타(레포,대차,콜 등)	1,781,435,957	1,246	0.00	3,275,186,978	2,270	0.00						
합 계	1,829,783,602	6,067	0.00	3,333,978,192	7,855	0.00						

- 주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 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 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 주2)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거래비용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

분하여 기재합니다.

마.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원]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연도 보유 매매회전율(A/B) 등종 유형							동종 유형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주식의 평균가액(B)	에에되면널(A/B)	평균 매매회전율				
	69	4,601,715	88	5,302,981	9,446,976	56.13	32.12				

주1)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퇴직연금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운용)

[단위: 백만좌, 백만원]

	7171-	· 11.7		회계기	l간 중		21.21.0	
기간	기간조	기간초 잔고 설정(발행		발행)	행) 환매		기간말 잔고	
기진	좌수	금액	좌수 그에 좌수 그에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금액 (출		금액	(출자지분수)	
2022/06/02~2023/06/01	52	48	8	7	20	18	39	36
2023/06/02~2024/06/01	39	36	5	5	10	9	35	34
2024/06/02~2025/06/01	35	34	9	9	22	22	22	24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종류형펀드

퇴직연금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C

[단위: 백만좌, 백만원]

	71 71 -	· 11.7		회계기	21.21.0				
기간	기간조	기간초 잔고 설정(발		설정(발행) 환매			기간말 잔고		
기진	좌수	금액	좌수	7.00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2/06/02~2023/06/01	19	18	1	1	9	8	12	11	
2023/06/02~2024/06/01	12	11	0	0	0	0	11	11	
2024/06/02~2025/06/01	11	11	5	5	16	15	0	0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퇴직연금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Ce

[단위: 백만좌, 백만원]

	7171-			회계기	기간말 잔고			
기간	기간초	: 산고	설정(발행)	환	OH	기간일	! 전고
गरा	좌수	금액	좌수	⊐. 0#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금액 (: 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2/06/02~2023/06/01	33	30	6	6	11	10	28	26
2023/06/02~2024/06/01	28	26	5	5	9	9	24	23
2024/06/02~2025/06/01	24	23	5	5	6	6	23	24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미래 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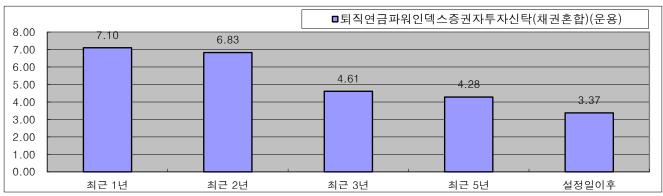
또한,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종류	최초설정일	2024/06/02 ~ 2025/06/01	2023/06/02 ~ 2025/06/01	2022/06/02 ~ 2025/06/01	2020/06/02 ~ 2025/06/01	(%)
퇴직연금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운용)	2017-06-02	7.10	6.83	4.61	4.28	3.37
수익률 변동성(%)	2017-06-02	6.65	7.20	7.50	7.02	6.45
퇴직연금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C	2017-06-02	3.55	4.58	2.83	2.85	2.15
수익률 변동성(%)	2017-06-02	6.25	7.03	7.39	6.95	6.48
퇴직연금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Ce	2017-11-28	6.26	5.99	3.78	3.46	2.55
수익률 변동성(%)	2017-11-28	6.65	7.21	7.51	7.03	6.64

-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 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 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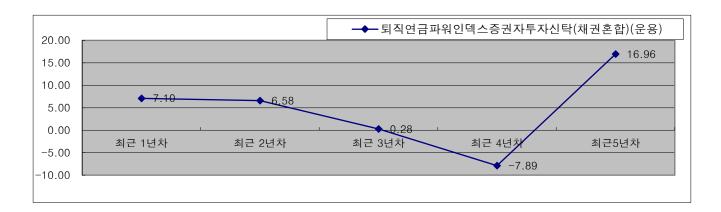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종류	최초설정일	2024/06/02 ~ 2025/06/01	2023/06/02 ~ 2024/06/01	2022/06/02 ~ 2023/06/01	2021/06/02 ~ 2022/06/01	2020/06/02 ~ 2021/06/01
퇴직연금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운용)	2017-06-02	7.10	6.58	0.28	-7.89	16.96
퇴직연금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C	2017-06-02	3.55	5.64	-0.60	-8.72	15.93
퇴직연금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Ce	2017-11-28	6.26	5.74	-0.51	-8.63	16.04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 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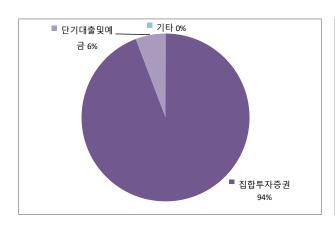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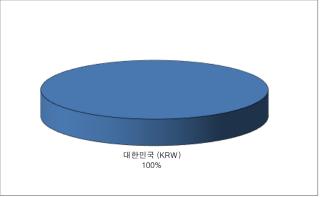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5.06.01 현재 /단위 :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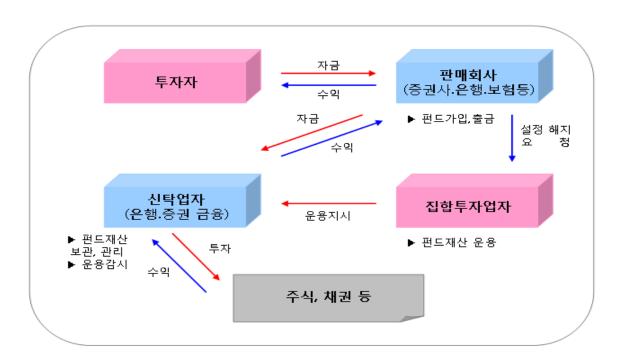
통화별	증권			파생상품			특별자산		단기대출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 권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자산	기타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대한민국	0	0	0	22	0	0	0	0	0	1	0	24
(KRW)	(0.00)	(0.00)	(0.00)	(94.23)	(0.00)	(0.00)	(0.00)	(0.00)	(0.00)	(5.71)	(0.06)	(100.00)
TIALSENI	0	0	0	22	0	0	0	0	0	1	0	24
자산합계	(0.00)	(0.00)	(0.00)	(94.23)	(0.00)	(0.00)	(0.00)	(0.00)	(0.00)	(5.71)	(0.06)	(100.00)

(주 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교보악사자산운용㈜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5층)
연락처	(02) 767-9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kyoboaxa-im.co.kr
회사연혁	1988.07.07 교보투자자문㈜ 설립 (교보생명 전액 출자)
	1996.07.30 교보투자신탁운용㈜ 출범 (납입자본금 300억원)
	2008.08.28 상호변경 (교보투자신탁운용→교보악사자산운용)
자본금	300억원
주요주주현황	교보생명㈜ 50%, AXA Investment Managers 50%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 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 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기준가격계산에 대한 업무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계산업무를 **하나펀드서비스㈜**에 위탁하였으며, 위탁에 대한 책임은 교보악사자산운용㈜에 있습니다.

다.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단위: 억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24.12.31	'23.12.31	항 목	′24.01.01~ ′24.12.31	′23.01.01~ ′23.12.31
현금 및 예치금	557	529	영업수익	433	411
유가증권	54	40	영업비용	259	253
대출채권	3	3	영업이익	174	158
유형자산	49	62	영업외수익	0	0
기타자산	132	142	영업외비용	0	0
자산총계	795	776	법인세비용	174	150
예수부채	0	0	차감전이익	174	158
기타부채	129	127	당기순이익	141	125
기타부채	129	127			
자본금	300	300			
자본잉여금	0	0			
이익잉여금	366	349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0	0			
자본총계	666	649			
부채 및 자본	795	776			

			추 게
			동계
			종계

라. 운용자산규모 (투자일임자산 제외/2025.06.01 현재/단위: 억원)

구분			증권	집합투자	기구			부동산 및	특별자산 및	흔합자산 및	단기금융	총계
	주식형	채권형	흔합협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부동산파생	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파생		
수탁고	9,134	85,217	5,810	0	5,805	15,051	0	240	13,744	864	110,907	246,776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신탁업자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신탁업자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
구도 및 한탁시 	1 (02) 2008-5000
회사연혁등(홈페이지 참조)	www.wooribank.com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① 의무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

② 책임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1) 최초설정일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구오 곳 건탁시	☎ 02-2168-0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aitas.co.kr

(2) 2021년 2월 2일부터

회 사 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층

	☎: 02-6714-46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hanai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구조 및 현탁시 	☎ 02-399-335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0년 5월 설립 (www.koreabp.com)

회 사 명	NICE피앤아이㈜
지 미 어라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주소 및 연락처	☎ 02-398-39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0년 6월 설립 (www. nicepni.com)

회 사 명	KIS채권평가㈜
지 미 어라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주소 및 연락처	☎ 02-3215-1433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0년 6월 설립 (www.bond.co.kr)

회 사 명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 02-721-53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11년 6월 설립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 tool 제공 업무
-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 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 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 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

다)한 것으로 봅니다.

-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하여야 합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기의 결의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 수익자는 연기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 외한다)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③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시행령 제223조 제3항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 2.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 3.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 ④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한국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 포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해당 증권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 등 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집합투자업 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교보악사자산운 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kyoboaxa-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수익자총회사항포함),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비교지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중요 투자전략의 변경은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

-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②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1개월 이내에 신탁업 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한국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③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을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 1호(주식)" 및 "교보악사 Tomorrow 장기우량증권모투자신탁 2호(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 금액 및 수수료와 그 비중

②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③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자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①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 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 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험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②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 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회계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 나.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 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 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 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 인 사유

②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	1) 일반주식매매
거래	- 거래증권사 :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 주문집행능력,
	매매체결수수료, 정보제공 및 Settlement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2) Cyber주식매매
	- 거래증권사 : Cyber 주식매매를 시행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위탁수수료, 매매
	업무 수행 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
	3) 일반채권 매매
	-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
	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CD, CP의 주요 중개기관인 신한, 외환, 우리, 산업, 기업은행은 당사 필요에 따
	라 거래증권사 선정의 예외로 인정하여 거래사에 포함
	-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 신용분석가
	4) 신규 발행 채권 인수
	- 국고채를 제외한 신규발행물 인수시에는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 대상으
	로 선정된 증권사 이외의 증권사와 거래 가능
	5) 외화표시채권 매매
	- 외화표시채권은 매매와 중개기관의 특성상 거래시 운용본부장의 개별 승인을
	득하여 거래 가능

1)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거래증권사 :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정보/ 영업능력, 위탁수수료, 매매업무수행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 여하여 평가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거래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2)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선물중개사 :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

성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용어풀이

용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 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 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 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 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 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투자금융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펀드코드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 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 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 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 옵션과 유사합니다.